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307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4. 9.

박 왕 규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안설명서

제안자: 박왕규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이
담보되지 않은 숲길 등에 무분별한 맨발걷기를 하는 사례가
늘고 있으며,
-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
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·확충할 근거를 마련
하여,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
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4조의2제3항에는 세족대, 신발장, 에어컨 등의 맨발걷기에
필요한 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의2제4항에는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점검
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.

□ **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**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박왕규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088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9. 12.

발 의 자: 박왕규 도하석 서보영

김정희 이진환 김장관

1. 제안이유

-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숲길 등에 무분별한 맨발걷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,
-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·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,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2. 주요내용

- 세족대, 신발장, 에어컨 등 편의시설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4조의2제3항)
-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점검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4조의2제4항)

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6조

나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, 신발장, 에어컨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
· 관리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맨발걷기길의 오염방지, 토사유실 복구 등을 위해 수시로
점검하고 유지,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맨발걷기길의 조성 등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4조의2(맨발걷기길의 조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, 신발장, 에어컨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·관리할 수 있다.</u> <u>④ 구청장은 맨발걷기길의 오염 방지, 토사유실 복구 등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,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

【 관계 법령 】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3조(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